

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. 1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1. 13

다. 상 정 일 자 : 2005. 1. 21

(제1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환경과장 임영태

나. 제안사유

-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선정시 “원칙”이라는 문구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사항으로, 종전 계약자에게 계속해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어 특혜의 소지를 없애고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“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”라는 내용 중 “원칙”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.(안 제5조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석호)

-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선정시 “공개모집을 『원칙』으로 한다”라는 조항에서 「원칙」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특혜소지를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되며
- 내용상 절차상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결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 의결”

7. 붙임 :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축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5조제2항중 “공개모집을 원칙”을 “공개모집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2조(사용료) ①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<u>공개모집을 원칙</u>으로 하고,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 | <p>제12조(사용료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 - - - - - - - - - <u>공개모집</u> -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|